「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를 위한 충남도의회·충남연구원 합동 연구모임 토론회

■ 일 시: 2019. 9. 10(화) 10:00

■ 장 소: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

■ 주 관: 충청남도의회 농민수당제 연구모임, 충남연구원 농민기본소득연구회





인 사 말

반갑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충남도의회 연구모임과 충남연구원이 합동으로 주관하는 뜻깊은 농민수당제 연구모임 토론회 자리에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단순히 농업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농업정책 또한 개방화에 따른 시장 제일주의 정책 으로 농업에 대한 단순 경쟁력만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업 농촌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진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업 관련 부가가치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약 1,335조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전히 작지 않으며, 그렇기에 지금보다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방안 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적합한 농민수당 제의 도입에 있어, 농업·농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조례 제정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충남의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 재정 분석을 통해 과도한 부담은 없는지, 또한 비농민과 도시 근로자 등 농민수당제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한 설득 과제 등 풀어 나가야할 것이 많음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겠지만, 이번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에 있어서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다른 지자체가 충청남도를 모범으로 삼고 합리적이고 훌륭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갈등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농민수당 조례안 초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세부적인 검토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더욱 고민하며 최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농민수당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모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도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충청남도의원 방한일

연구모임 회원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비고
대 표	방한일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간 사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김득응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회 원	김복만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회 원	김명선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회 원	조승만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회 원	김영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회 원	이선영	충청남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회 원	추 욱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회 원	김병혁	충남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회 원	배연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회 원	김희봉	당진시 농민회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회 원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회 원	김지숙	부여군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회 원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I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9. 9. 10.(화) 10:00~12:00

○ 장 소: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112호)

○ 주 관: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충남연구원 농민수당제 연구회

○ 주 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와 논의

Ⅱ 진행 계획

시 간부터~까지	소요	내	8	비고			
< 개회식 >							
10:00 ~ 10: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 박경철(연구모임 간사)			
10:05 ~ 10:15	10′	내빈소개,	인사말씀	방한일 의원			
< 토론회 >							
10:15 ~ 10:35	20′	주 제	발 표	·방한일 -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10:35 ~ 11:25	50′	지 정	토 론	·김병혁 -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지숙 - 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이선영 - 층청남도의회 의원 ·조광남 - 예산덕산농협 이사 ·배연근 -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11:25 ~ 11:55	30′	청 중	토 론	· 토론 참여자 전체(질의응답)			
11:55 ~ 12:00	5′	정리 5	및 폐회	· 좌장			

■ 주제발표
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초안) 설명 00
- 방한일(충청남도의회 의원)
■ 지정토론(연구모임 회원)
^[4]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00
- 김병혁(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F5 충청남도 농민수당 조례안 내용 고찰················· 00
- 김지숙(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농(어)민수당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정의당안과
의회연구모임안 비교·검토 ·············· 00
- 이선영(충청남도의회 의원)
④ 충남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에 대한 생각 00
- 조광남(예산덕산농협 이사)
5 농민에게 필요한 농민수당제 도입의 당위성 ··············· 0 0
- 배연근(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 참고1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참고2 -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만 검토와 논의를 위한

 연
 구
 모
 임
 토
 론
 회

주제 발표

- ▶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인(초안) 설명
 - 방 한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초안)

방 한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 의회운영위원,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4. "농민수당"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

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2. 도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농민수당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농민에게 연간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도,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사항
 -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업무관련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 3. 그 밖에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소관 과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 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 는 경우
-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농민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서를 당해 주소지 관할 이장·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수급 요건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 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결정 통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그 외 지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한 필요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지원제외)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 1.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 2.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3.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 제13조(지급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 제14조(의무이행)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마을별로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회의, 공동실천 활동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 정 토론(5명)

- ▶ 충청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의견
 - 김 병 혁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 ▶ 충청남도 농민수당 조례안 내용 고찰
 - 김 지 숙 (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 ▶ 농(어)민수당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정의당안과 의회연구모임안 비교·검토
 - 이 선 영 (충청남도의회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 ▶ 충남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에 대한 생각
 - 조 광 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 ▶ 농민에게 필요한 농민수당제 도입의 당위성
 - 배 연 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김 병 혁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 조례안에 대한 의견

- 1. 제1조(목적)
-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 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음.
- 목적에 물론 공익적 기능 증진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가장 먼저 목적으로 표현할 내용이 소득안정보다는 농업이 담당하는 공익적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에 대한 것이 표현되었으면 함.
- 이유는 추후 농민수당 금액을 높일 때 전체 사회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함.
- 실제 연구기관마다 금액을 다르지만 농업이 담당하는 사회공익적 기능에 대한 산출액이 67조에서 166조로 농업이 가진 산업적가치보 다 사회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해 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조례안을 수정한다면 "이 조례는 농업인과 농업이 담당하는 공익적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조례안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농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2조(용어의 정의)

- 4항에 "농민수당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이것을 만약 앞의 이유로 목적을 수정한다면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로 수정했으면 함.
- 가능하다면 용어의 정의에 농업의 사회공익적 기능에 대한 항을 추가 해 농업의 사회공익적 기능이라 함은 식량안보, 생태환경 보존, 전통문화 보전, 대기 질 개선,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 토양유실 방지, 지역사회 유지 및 국토균형 발전 등을 표현했으면 함.
- 이유는 목적에서 농민수당의 지급 목적을 공익적기능에 주목한다면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농민수당 지급의 근거에 대한 명분을 확대했으면 함.
- 불발되기는 했지만 지난 헌법개정문제에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표현과 이에 대한 국가적 보상문제가 헌법개정 정부안에 포함되기도 했었음.

3.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 연간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60만 원을 최소기준으로 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함. 만약 차후 금액을 상향 할때마다 조례안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조례안에 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시군에서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시군이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시행규칙에 포함 하는 것이 어떨까 함. 물론 그런 시군이 있다면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때 지급금액을 변경하는 것도 방법

■기타 의견

1. 농업환경실천프로그램과의 연계

- 현재 정부차원의 직불금 개편 방향이 기본직불금과 부가형직불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계획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기본직불금 예산으로 2조2천억원을 올리는 것을 계획 중.
- 기본직불금은 기존의 농업관련 직불금을 통폐합하고 예산을 추가해 기본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부가형직불금은 친환경농업, 경관농업, 조 건불리지역, 토종종자 등 특수한 농업분야에 부가하는 것을 검토 중임.
- 그래서 충남 농민수당 역시 농민수당과 농업환경실천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보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급하고 농업환경실천프로그램은 약간의 이행조건을 붙여 부가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함.

2. 농민수당으로 할 것인가, 농어민수당으로 할 것인가

- 농민수당을 농어민 수당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만약 농어민수당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번 조례안에 어민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로 만들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함.

충청남도 농민수당 조례안 내용 고찰

김지숙 부여군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농(어)민 수당 조례안 쟁점에 대한 정의당안과 의회연구모임안 비교·검토

이 선 영

충청남도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 의회운영위원,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

농민수당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명, 지급대상 및 범위, 지급방법 및 지급액, 지원제외 항목에 등에 대해 정의당안과 의회연구모임안을 비교 검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 먼저 조례명을 보면 의회연구모임안은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정의당안은 "농어민 기본수당 직접지불 조례안"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연구모임안에서는 주체를 농민으로 보고 내용을 정리했고, 정의당안은 농민과 임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농민, 임어업인이 생활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조례안에 담을 산업범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2. 지급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정의당안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의회연구모임안이 충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2. 도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정의당안은 충남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 따른 농업경 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및 농업종사자로 도내의 농지에 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농민.
 - 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경우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 경영체의 경영주 및 어업종사자로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민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 및 영어조합법인에 1년 이상 소속된 농어업종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3. 지급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서

의회연구모임안이,

① 농민수당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농민에게 연간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정의당안은,

- ① 농(어)민 기본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분기별로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종사자가 실제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예외 없이 지급한다.
- ③ 영농 및 영어 조합법인에 소속되어 수급요건을 갖춘 종사자에게도 예외없이 지급한다.

4. 지원제외 항목에 대해서

의회연구모임안은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 1.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2.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3.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신청 직전년도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미등록한 사람
- 2. 신청 직전년도 기준 해당 분야에 종사한지 1년이 미경과한 사람
- 3. 신청 직전년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4.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징계 처분중인 사람 (5년간 자격제한).
- 5.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6. 농지 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7.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지급중지 및 회수 항목에 대해서

의회연구모임안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안은 좀더 구체적으로,

-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② 도지사는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농(어)민 기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농(어)민 기본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 6. 쟁점은 아니지만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두 안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요 정의당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합니다.

"이 조례는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농어업 발전의 계기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 도지사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급신청 및 절차,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의 의무이행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을 반영하여 연구 모임에서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여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제안 을 드립니다.

사실 2019년 상반기 중 정의당의 중점 정책 중의 하나인 '농어민수당 표준조례안'을 연초부터 지방의원단 워크숍을 통하여 논의하여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충남도의회에서 농민수당 관련 의회연구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려 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토론회 및 연구모임에 참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다가 지난 7월 29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제정 방향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세번째 토론회'를 마치고 농민수당 관련 의회연구모임에 공식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농민수당 관련 토론을 하며 함께 의견을 나누고 모아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성안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발언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농민직불금이 지금의 시대에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농들의 농민직불금은 수억원 대에 이르고 소농은 그러지 못하는 불평등한 농업정책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평등한 대농 중심의 농업정책 오류로 농민의 삶은 더욱 더 열악해졌다고말할 수 있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관심갖고 논의해서 참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기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수당지급이라는 의제에 동참하면서 제대로 결과물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소통하여 진정 농어민들을 위한 기본소득(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발의, 가결되어 정책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농민수당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조 광 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농민에게 필요한 농민수당제 도입의 당위성

배 연 근 공주시 푸드플랜 활동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8.16 입법예고)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 2.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행정적·재 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공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농민・어민 및 농업・어업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공익수당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공익수당이 농민 및 어민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급권자의 책무)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촌·어

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 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등

-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 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공익수당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공익수당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2. 공익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3. 공익수당 추진·홍보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4. 마을별 정례교육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① 공익수당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조정실장
 - 2. 농축산식품국장
 - 3. 해양수산국장
 - 4. 동부지역본부장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가. 농업·어업분야 전문가
 - 나.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라. 농민 · 어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공익수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① 공익수당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익수당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 ④ 공익수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시·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시·군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익수당 수급권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의 심의
 - 2. 제18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결정
 - ② 시·군 공익수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읍·면·동 공익수당 위원회) 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읍·면·동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면·동 공익수당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읍·면·동 공익수당 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의 이장·통장, 부 녀회장, 어촌계장 등 지역의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 ③ 읍·면·동 공익수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 ④ 읍·면·동 공익수당 위원회는 제14조 각 호의 지급 제외대상을 심의한다.
- 제12조(마을별 정례교육) ①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 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매년 마을별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② 마을별 정례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제13조(지급대상)**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
 - 2. 실제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
 - ② 도지사는 향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14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신청 전전(前前)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2. 신청 전(前)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3.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

- 4.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5. 제4호에 따른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 6. 전년도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7. 전년도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8.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9. 전년도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10. 제13조의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제15조(지급금액) ① 공익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지급금액은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16조(지급방법) ① 공익수당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하여 지급한다.
 - ② 공익수당은 전라남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제4장 지급절차 등

- 제17조(지급절차 등) ①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당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관할 지역 내 신청서를 취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읍·면·동장은 제11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에게 제출 전 읍·면·동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 제10조제1항의 시·군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급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는 지급대상에 대한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결정 통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의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1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행방불명,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도 관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 ③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지급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지급된 공익수당을 환수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 제19조(이의신청) ① 제17조제4항에 따라 최종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 제18조제2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는 시·군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처리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공익제보) 누구든지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제5장 도와 시ㆍ군간 협력 등

- 제21조(도와 시·군 협력)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공익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분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 제22조(불용예산) ① 시장·군수는 미집행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11월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반납된 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3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공익수당 지급절차 등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4조(성과평가)** 도지사는 매년 수급권 집행실적 및 수급권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참고2</u> 예산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8. 27 입법예고)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농업인"이란「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2호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중에 농업인을 말한다.
 - 4. "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6호 중에 어업인을 말한다.
 - 5.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 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워금을 말한다.
 - 6.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농업식품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 7. "농지"란「농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8. "산지" 란「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따른 농업경영 체를 등록한 사람 중 군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농업인
 - 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경우다. 가축시설이 군내에 있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따른 어업경영 체를 등록한 사람 중 군내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 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제4조의 농민수당은 연간 1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산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 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 3.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 4.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기획담당관, 농정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지급신청)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제13조(지급결정 절차) ① 읍·면장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조사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 제14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농업 경영
 - 정보를 미등록한 사람
 - 2.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3.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4.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5. 신청 직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 제15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4. 그 밖에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군수는 제14조에 해당하는 지급대상 제외자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되어 환수조치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6조(의무이행)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 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 1.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 2. 「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

- 3. 농지·산지 불법 훼손 금지
- 4.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 5.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 6.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농지 형상 유지
- 7.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 8.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